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2조 제2호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실·국장, 과장급”으로 한다.

■ 검토의견

-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한 조사권·감사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의견의 진술을 듣고 싶은 경우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위임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 경우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입니다.
-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조직개편으로 18실·과·담당관제가 15실·과로 편재되어 담당관제도가 폐지되었기에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 같이 “실·국장, 과장급”으로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종전의 규정형식처럼 “실·국장, 실·과장급”으로 하지 않고 “실·국장, 과장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국장이라고 할 때의 실장의 직급은 국장과 동일 직급의 실장을 의미하고, 과장급이라는 함은 과장과 동일직급의 실장 또한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제58조